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032508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0325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가합5024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중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변론종결 2021. 12. 9.

판결선고 2022. 1.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가합50246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각 10억 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표 안 제2, 3행, 제3면 표 안 제1, 3, 5, 13행의 각 “원고”를 모두 “D”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채동수, 판사 박혜선